

# 예산총칙

201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35,085,673	4,052,570
일반회계	116,649,006	3,499,470
특별회계	18,436,667	553,100
기타특별회계	18,436,667	553,100
의료급여기금	233,625	7,009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61,055	1,832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	1,227,766	36,833
주거환경개선사업	414,356	12,431
주차장	16,294,883	488,846
지하수관리	204,982	6,14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안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074,099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